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가단2835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기윤도

변 론 종 결 2023. 7. 7.

판 결 선 고 2023.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2. 접수 제2255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2017. 2. 1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부부 사이이고, 자녀로 피고(장녀), B1) (장남), 망 E(차남, 2018. 5. 4. 사망), F(삼남)이 있으며, 망 E의 배우자로 G, 자녀로 H, I(이하 G, H, I을 ‘G 등’이라 한다)이 있다.

나. 원고는 2018. 11. 22. 피고에게 원고가 2014. 10. 4.부터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2. 접수 제22553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22. 2. 18. 피고에게, “피고가 B의 유치원 상속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이유가 사라졌으니 이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자필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5호증, 을 제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는, 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할 것, ② 망인의 상속재산인 유치원에 대하여 피고가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할 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는 부담부 증여인데, 피고가 위 각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22. 2. 18.자 내용증명의 송달로써 이 사건 증여를 해제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제9호증의 2, 12,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증여 당시 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것, ② 망인의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유치원에 대한 피고의 상속지분을 포기할 것을 각 조건으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가 위 각 조건이 붙은 부담부 증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의 사망 후 B는 원고, 피고, F, G 등을 상대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청구 및 기여분청구[서울가정법원 2018느합1484(본심판), 2019느합1269(병합심판)]를 하였고, F은 같은 법원에 B, 원고, 피고, G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서울가정법원 2019느합1416(반심판)]를 하였다.

② 서울가정법원은 2020. 12. 21.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여러 건의 부동산(서울 강서구 J 소재 유치원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유치원 등'이라 한다)이 있음을 전제로 B의 상속재산분할청구 및 기여분청구, F의 상속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B의 기여분을 50%로 정하고 이 사건 유치원 등을 B가 단독으로 소유하며, B는 상속재산분할 정산금으로 원고에게 322,440,360원, 피고에게 221,626,906원, F에게 107,027,530원, G에게 83,003,804원, H, I에게 각 55,335,86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다.

③ B와 F은 위 심판에 대하여 각 항고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21. 11. 24. 서울고등법원 2021브2015(본심판) 상속재산분할, 2021브2016(병합심판) 기여분, 2021브2017(반심판)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기여분결정 청구에 관한 F의 항고를 기각하고, 본심판 및 반심판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B의 기여분이 50%임을 전제로 이 사건 유치원 등을 B가 단독으로 소유하며, B는 상속재산분할 정산금으로 원고에게 343,039,548원, 피고에게 228,685,765원, F에게 114,244,790원, G에게 86,050,271원, H, I에게 각 57,366,84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21. 12. 21.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④ B는 2021. 12. 28.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유치원 등에 관하여 이 사건 결정에 따라 B 명의로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하는데 있어 이에 대한 피고의 서류 일체를 협조하면, 기존 차용금

30,000,000원을 정산금에서 제외한 198,685,765원을 피고가 지정하는 피고 명의의 계좌에 2022. 1. 31.까지 입금하고, 미이행시 피고가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데 있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⑤ B가 이 사건 유치원 등에 관하여 이 사건 결정에 따라 B 명의로 단독 상속등기를 하였음에도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K로 B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이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⑥ 이에 대하여 B는 서울가정법원 2022드합67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는 위 상속재산분할 등 심판 청구가 진행 중이던 2018. 12. 1. “위와 같이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상속지분에 대한 문제가 법적으로 야기된다면, 본인의 유치원 지분을 B에게 조건 없이 무상 양도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것에 B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대신 피고가 망인에 대한 상속지분을 B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결정이 부당하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이 사건 유치원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⑦ 그러나 서울가정법원은 2023. 5. 18. 이 사건 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B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다만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지불각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정산금 채권은 기존 차용금 30,000,000원을 정산금에서 제외한 나머지 198,685,7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 잔존하므로, 이 사건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B에게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쌍방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⑧ 이러한 망인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관련 사건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유치원 등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B, 피고 및 F 등 사이에 상당한 다툼이 있었고, 이 사건 결정을 통하여 비로소 법률상 다툼이 일단락된 것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이 사건 결정 및 그 근거가 된 자신이 작성한 이 사건 지불각서의 기재내용을 부인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까지 제기하였다가 실질적으로 패소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

⑨ B가 위 상속재산분할 등 심판 청구의 소송 절차에서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 사건 결정에서는 B로 하여금 피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게 하는 취지로 판단하고, 이 사건 유치원 등을 B의 단독 소유로 인정하지 않은 점, B가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된 이후인 2021. 12.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결정 및 위 청구이의의 소에서의 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 사실확인서 및 이 사건 지불각서를 포함하여 B와 피고 등 상속인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속인들의 지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⑩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하면서 당시 어떠한 조건이나 부담을 정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자료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상속재산을 둘러싼상속인들의 법적 분쟁에서 B와 피고 등 사이에 이 사건 유치원 등 소유권 귀속에 다툼이 있었을 뿐 그것이 원고와 그 장녀인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문제와 연관될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은 2014년경부터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망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B가 이의를 제기하는지 여부가 어떤 영향을 미칠 근거도 없다고 보이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증여가 피고가 B에게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유치원 등의 소유권을 B의 단독 소유로 인정해주는지에 따라 좌우될 것도 아니라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양철한

별지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평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

1층 699.82㎡, 2층 725.74㎡, 3층 725.74㎡, 4층 725.74㎡, 5층 725.74㎡, 6층 725.74㎡, 7층 725.74㎡, 8층 725.74㎡, 9층 725.74㎡, 10층 725.74㎡, 11층 725.74㎡, 12층 725.74㎡, 13층 725.74㎡, 14층 725.74㎡, 15층 725.74㎡

부속 건축물

철근 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2층 노인정, 관리사무소, 입주자 회의실 1층 262.28㎡, 2층 260.28㎡,

철근 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지하주차장 지하층 1908.33㎡,

철근 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지하주차장 지하층 1526.21㎡,

철근 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열교환실, 전기실, 펌프실 지하층 390.41㎡,

철근 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단층 경비실 8.8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조 59.0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 12645㎡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12645.0분의 39.063

1) 원고의 이 사건 소송대리인이다.